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3. 2. 3. 개정 판 (시행 2023. 2. 2.) → 2023. 3. 27. 개정 판 (시행 2023. 3. 1.)

바뀜 1 · 신설 6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75/compare?from=1412&to=1449>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12:18:30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9. 임상외래교수: <u>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u> <u>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u> <u>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u>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3-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자격) 임상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신 설>	제44조(임용절차) 임상외래교수의 임용은 학과교수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처우)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신 설>	제46조(의무)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실습 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신 설>	제47조(임기) 임상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보수)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9.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자격) 임상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임용절차) 임상외래교수의 임용은 학과교수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처우)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무)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실습 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임기) 임상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보수)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